

범죄신고자등 보좌인지정(취소·교체)서

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을 지정(취소·교체)한다.

사 건 번 호		
신 원 관 리 카 드 관 리 번 호		
피보좌인(가명)		
현 보 좌 인		
결 정 유 형	지정 · 취소 · 교체	
보 좌 인	성명	직업
	생년월일	전화번호
	주소	
	피보좌인과의 관계	신변안전조치 해당여부
	신청인과의 관계	
지 정 (취 소 · 교 체) 원 인	○○○의 신청, 직권	
사 유		

년 월 일

소속

직위(직급)

성명

인

※ 피보좌인 또는 신청인이 신원관리카드 작성대상자인 경우에는 성명은 신원관리카드상의 가명으로 기재하고, 주소는 기재를 생략함